

# 전기사고 소송판례 ③



## 自家用電氣設備의 女職員 感電事故

### 1. 본 협회의 조사내용

#### 가. 일반사항

- (1) 조사일시 : '87. 12. 2. 15 : 20~17 : 00
- (2) 장 소 : ○○구 ○○동 ○○아파트 변전실
- (3) 조 사 자 : 대한전기협회 기술과장 김기욱
- (4) 입 회 자 : ○○○아파트 전기보안담당자 정○○외 3인
- (5) 사고일시 : '87. 12. 1. 19 : 50

#### 나. 전기설비(3차 변전실)

- (1) 설비용량 : 850kVA (200kVA × 3대, 250kVA × 1대)
- (2) 전 압 : 6.6kV / 220V, 110V
- (3) 전기공급계통도 : 별첨 1

#### 다. 사고경위

사고당일 주 보일러실(관리사무실동)에서 경리과 여직원 2명과 보일러실 직원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제 3 변전실 옆에 있던 보일러 가동을 하기 위해 그곳에 보일러 직원(김○○30

세 정도)과 여직원이 함께 보일러실에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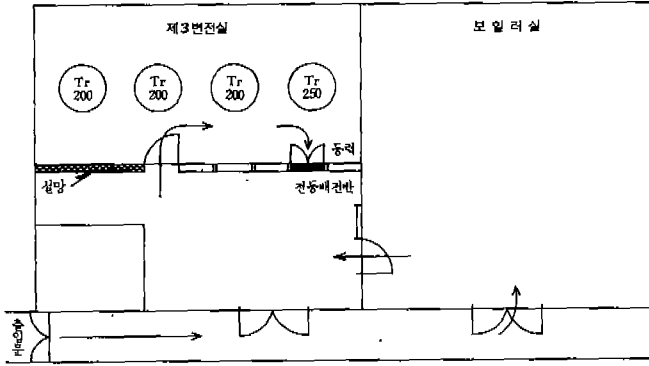
그 때 아파트 주민이 난방이 안되므로 항의하는 소리에 여직원 김○○이 보일러실과 변전실로 통하는 문을 사용, 변전실로 들어가 배전반과 일직선에 있는 철망문을 통해 들어 갔으며(그곳은 변압기와 배전반 뒷문을 열수 있는 곳) 다시 전등배전반을 열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계기용 변류기 동부스바(높이 50cm정도)와 계기용 변압기 1차 6.6kV 퓨즈(높이 100cm 정도) 부분에 접촉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머리 부분이 6.6kV고압에 혼촉하여 심한 전기의 충격으로 쓰러졌음. 그때 머리와 하의에 불이 붙어 심한 화상을 입었음.

아파트 동 사이 지하에 위치한 보일러실에 주민이 들어와 항의하고 올라간 후 변전실 쪽에서 굉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정전이 되어 보일러 직원이 변전실로 들어가 불에 타고 있는 여직원을 발견,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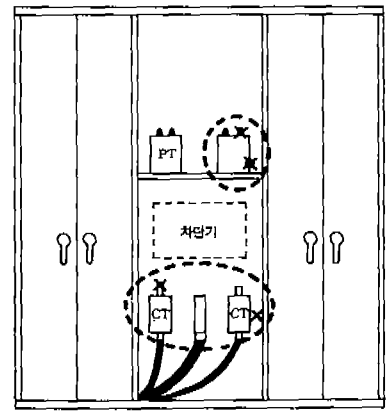
#### 라. 조사내용

##### (1) 전기설비상태

○보호장치



(그림 1) 제3 변전실 보일러실 단면도



× : 배전반 뒷편 혼촉된 용접

- 주차단기 (O. C. B) 동작
- 3차 배전반용 변압기 1차 C. O. S 2개 용단
- 3차 배전실 사고회로 계기용 변압기 퓨즈 1개 용단
- 전동배전반 상태 (별첨 2)
  - 용접표시 : R 상 CT 1차 부스바 T 상 PT 1차 퓨즈 홀다
  - 접촉표시 : CT 우측 철관 PT 지지 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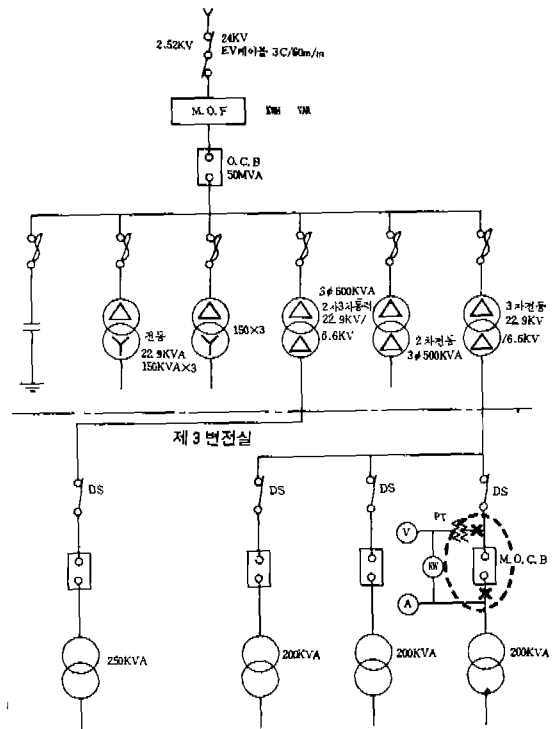
(2) 기 타

- 제3 변전실은 무인 변전실
- 변전실 출입문의 채정장치 되어 있음
- 변전실과 보일러실 문은 변전실에서 잠글 수 있고 보일러실에서 열쇠를 사용, 문을 열 수 있음.
- 철망문이 있음
- 모든 전기관계 직원이 교체된 후 근무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음(약 1달 정도)

마. 사고원인 및 대책

(1) 전동배전반 함에 들어가게 된 이유

- 남녀가 퇴근 후 남자만이 근무하는 장소에 있게 됨을 은폐하려고 변전실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 변전실에서도 발견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 : 접촉 표시로 용접이 생긴곳

(그림 2) 수전설비 단면도

배전함 뒷면으로 돌아가 무심코 전동배전반을 열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고압에 혼촉, 감전된 것으로 추정함.

○ 사고 당한 여직원은 고등교육을 받은 충분히 전기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무의식중 행동한 것으로 추정함.

(2) 대책

○누구를 막론하고 전기실 직원 허락없이는 전기실에 특히 철망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됨.

○변전실에서 보일러실로 통하는 문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인(아파트 주민포함)은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과 전기실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

○전기설비는 대단히 위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그 설비를 관리하는 자는 오랜 경험과 그 설비를 장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너무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이직률이 높으므로 전문성이 결여됨.

2. 항소장

- (1) 원고(항소인) 윤 ○ ○
- (2) 동 문 ○ ○ 현
- (3) 동 문 ○ ○ 철
- (4) 동 문 ○ ○ 혜

서울 ○○구 ○○○동 위 ○○철, ○○혜 등은 미성년자 등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모 윤○ ○녀 위 원고 등 대리인 변호사 김○○ 서울 종로구 신문로 ○가

- (1) 피고(피항소인) ○○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권 ○ ○

서울 ○○구 ○○동 ○○래아파트 관리사무소

- (2) 동 문 ○ ○

서울 ○○구 ○○동

송달장소: 서울 ○○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 당사자간 서울 지방법원 ○○지원 88가합 2968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은 동원이 1988. 7. 15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표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1988. 7. 21 송달 받았음)

항소 취지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에게 금1,000,000원, 원고 ○○현에게 금 18,469,382원, 원고 ○○철, 원고 ○○혜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1, 2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소 이유

추후 제출 하겠음

첨부서류

- (1) 항소장 부분 2통
- (2) 위임장

1988. 8.

위 원고 등 대리인

변호사 김 ○ ○

서울 고등법원 귀중

3. 사고 조사자의 답변

(88나31946손해배상(기))

원고: 윤 ○ ○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1) 증인은 원고 등 및 피고 등을 아는가요.

○원고는 며칠전 찾아왔기 때문에 보았고 피고는 사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 (2) '87. 2. 2 ○○○아파트의 3차변전실내 인명사고현장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

- (3) 그 조사 의뢰는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요?

○진달래 아파트 소속 전기기사 이○○씨로부터

터 연락을 받았다.

(4) 이것이 증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인가요?

○예

(5) 조사서 3, 사고경위에 기재된 내용은 증인이 누구로부터 들어서 기재한 내용인가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정○○로부터 들었다.

(6) 변전실 출입문의 채정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서 “나” 기타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출입문이 채정이 되어 있었는지요?

○변전실 출입문의 채정장치가 채정되어 있었다(조사시에).

(7) 변전실에는 철망문이 있는데 그 철망문은 통상 잠그지 않고 열어 두어도 되는가요?

○관리상의 문제로서 열어둘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

(8) 5항 사고원인 및 대책의 가의 첫머리에 기재한 피해자가 변전실에 들어간 이유나 판단은 증인의 누구로부터 들어서 기재한 것인가?

○사고 경위로 보아 본인이 추정 한 것이다.

(9) “나” 대책에는

① 기관실에만 기관조원이 있을 때에는 기관조원은 사람의 전기실 출입을 모른 채해도 되는가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다.

②-③ 전기실 출입 주의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전기실을 관리하는 전문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고 아파트의 보일러실에서 전기실로 통하는 문은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달리 출입구 계단에서 변전실로 직접 출입할 문이 있으므로 전공이 필요한 때에는 그 문을 사용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고 사고자가 출입한 문은 폐쇄해도 관리 운영상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으나 변전실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10) 따라서 관계 직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끔 기관실에서 변전실로 출입하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은 변전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는가요?

○그것은 회사 내부의 운영 상태로서 보일러실과 전기실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여 저로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1988. 11. 1 김기욱

#### 4. 고등법원 판결

가. 사 건 88나 31946 손해배상(기)

나. 원고, 항소인

(1) 윤 ○ ○외 3인

원고들의 주소 서울 중랑구 ○○3동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다. 피고, 피항소인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회장 권 ○ ○

소송 대리인 변호사 오 ○ ○

(2) 문 ○ ○ 서울 양천구 ○○동

라. 변론종결 1988. 11. 22.

마.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지원 1988. 7. 15 선고

88가합 2968판결

바.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원고 윤 ○○에게 금 300,000원, 원고 ○○에게 금 5,270,547원, 원고 ○○철, ○○혜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 12. 1 부터 1989. 1. 17까지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문재명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문○○ 사이의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 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에게 금 18,469,382원, 원고 ○○철, ○○혜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 12.1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 아. 이유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의 다툼이 없는 강제 1호증의(호적등본) 강제 3호증(제직증명서), 강제 6호증의 1,2(관리규약 표지 및 내용), 강제 9호증의 1(사건 송치서), 3(의견서), 6(상해진단서), 7(안전사고발생보고), 9(감전사고 조사결과통보), 8, 10, 11, 12, 14(각 진술 조서), 13, 1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기욱, ○○석의 각 증언(단 증인 ○○의 일부 증언중 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의 각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위 아파트관리 업무의 최고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서 관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그 산하에 소장 1인 및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통칭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 위 관리사무소의 서무담당직원이던 원고 ○○현이 1987.

12. 1. 13:00경 업무를 마치고 위 관리 사무소의 기관실 조원인 소의 ○○석 및 다른 남자 직원 등 6명과 함께 기관실에서 술과 고기 등을 먹고 같은 날 19:00경 귀가하기 위하여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아파트 단지내의 16동 지하에 설치된 3차 열관리실에서 근무중이던 위 ○○석을 찾아와 함께 있던 중 그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자인 아주머니 2명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위 열관리실로 찾아와 기관실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위 입주자들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열관리실에서 그 옆의 제 3 변전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변전실의 중간에 설치된 방책철사망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전등수전반이 가설된 캐비닛 모양의 큐비클(Cubicle) 위에 몸을 낮추어 숨으려다가 6.6킬로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등수전반에 접촉하여 감전됨으로써 우측두부전이부, 안면부 우측하지등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된 사실,

위 대표회의의 관리규칙에 의하면 자치관리기구는 고압가스 난방, 발전 및 변전시설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진단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면 당해 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 2항 제 2호에 의하면 변전실의 출입구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정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전기주임으로 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소의 ○○주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차 변전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지하실의 출입구에 통제구역이라는 낱말을 설치하고 변압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망에 위험 표지판만을 부착하였던 사실, 원고 윤○○는 원고 ○○현의 어머니이고 원고 ○○철, ○○혜는 그의 동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

되는 당심증인 ○○석의 일부 증언은 위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물 등의 점유, 관리자인 피고 대표회회의가 위 3차 변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된 채로 방치한 보존상의 하자과 위 피고의 피용자인 위 ○○주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즉, 위 피고는 위와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위 ○○주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문○○이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서 관리실의 조원인 소외 ○○석과 전기주임인 소외 ○○주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위 피고는 피고 대표회회의의 대리감독자로서 위 소외인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는 강제 6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은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아파트내의 관리업무를 총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관리규약 제16조 2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문○○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아파트단지 내의 열관리실 및 변전실은 관계직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구역이고 특히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동수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히 철망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위 원고가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인 사고당일 19:30경 직무와 관계없이 위 3차 열관리실로 소외 ○○석을 찾아 갔다가 입주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급히 변전실과 차단철망의 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전동수전반 뒤로 몸을 숨기려

다가 이 사건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피고 대표회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75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2) 손해배상액

### (가) 치료비

원심증인 ○○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강제 7호 1, 2 (치료비계산서 및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현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고일부터 1988. 3. 2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로 합계 금 2,804,330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좌우이부결손 및 좌측 족두부 탈모증, 우측대퇴부힘줄결손 등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치료비추정액이 금 6,167,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는 합계 금 9,772,190원 (=2,804,330+6,967,860)이 된다.

### (나) 상실수입액

위에 든 강제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 4호증의 1, 2 (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강제 10호증의 1, 2 (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에 든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68. 2. 11. 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9세 9월 남짓되고 그 나이되는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은 54년 남짓되는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외상을 입은 이외에 우안 황반부 변성의 휴우증세가 남게 되어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그 노동능력의 27퍼센트 가량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별론종결일에 가까운 1987. 9.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이 1일 금 5,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반일용노동은 1달에 25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세가 되는 1988. 2. 11부터(사고후 3개월)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55세까지 432개월간 도시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37,500원(=5,500×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에 의한 손해의 후유증으로 그 중 노동력의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 37,125원(=137,500×0.27)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분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금 8,910,000원(=37,125×(247.85578531-2.97524048, 단 240을 넘는 호프만 수치는 현가액의 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240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이 된다.

#### (다) 과실상제

그러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18,682,190원(=9,772,190+8,910,000)이 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액 중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670,547원(=18,682,190×0.25)이 된다.

####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한 위 원고는 물론이고 그의 어머니 및 동생들인 나머지 원고들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표회회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부상의 정도, 연령, 가정형편, 원고 ○○연의 파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은 원고 윤○○에게 금 300,000원, 원고 ○○연에게 금 600,000원, 원고 ○○철, ○○혜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표회회는 원고 ○○현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5,270,547(=4,670,547+600,000), 원고 윤○○에게 위자료 금 300,000, 원고 ○○철, ○○혜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7.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9. 1. 17까지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원고들은 위 사고일부터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피고 대표회회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은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 17

재판장 판사 김 ○ ○의 2인